

2023학년도 폭력예방통합교육 안내

(학부생, 대학원생 대상)

1. 개 요

폭력예방교육은 대학 구성원이라면 **누구나 매년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**으로서 4대 폭력, 즉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괄하는 것이 폭력예방통합교육임

2. 법적근거

성희롱 예방교육	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성폭력 예방교육	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(성폭력 예방교육 등)
성매매 예방교육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(성매매 예방교육)
가정폭력 예방교육	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 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
3. 교육기간

2023년 5월 1일 ~ 12월 31일

4. 교육대상

학내 모든 구성원 (총장, 교원, 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 등)

5. 교육방법

- 가. 샘플포털시스템 (<http://portal.smu.ac.kr>) e-Campus에 접속하여 2023학년도 폭력예방통합교육 대상별 과목 수강 (총 110분)
- 나. 동영상 강의 시청 후 **퀴즈까지 완료하여야 교육 이수**
- 다. 수강 후 반드시 **영상별 진도율 100% 확인 필요**

6. 교육 이수증 취합 및 발급

- 가. 타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발급받아 인권센터에 제출하면 이수처리 (kdh7027@smu.ac.kr)
- 나. 상명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발급 가능

7.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

- 가. 해당교육을 이수한 **학부생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4점 부여**
- 나. 2023. 9. 1. ~ 12. 31.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면 2024년 1월 마일리지 부여

8. 문 의

인권센터 hrc.smu.ac.kr ☎ 서울 02-2287-7027 천안 041-623-0067